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당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미국산 전기 다리미 제품을 국내 수입 판매 하려 합니다. 전기 안전 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입 통관전에 검사를 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검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서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미국제조업체로 부터 이 검사와 관련해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보다 수월히 진행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A 문의하신 전기다리미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품목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시에는 제품설명서, 전기회로도면, 부품명세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안전인증은 제조자가(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 하여 안전인증 신청 가능) 제품 출고전(통관전)에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전인증시험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시어 인증절차, 비용, 소요기간 등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7524
- ▶ 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66
- ▶ 한국전자파연구원 : 031)336-2420

Q 당사는 램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가 인증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2003년까지는 E베이스를 장착한 소비전력 1KW 이하 램프가 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증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질의하신 07.3.1부터 새로이 인증대상으로 추가되는 방전램프는 일반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무전극램프입니다. 이중 무전극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은 '06.8월중에 신규로 제정예고될 예정이며 나머지 방전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은램프(K60188), 메탈할라이드램프(K61167), 나트륨램프(저압:K61092, 고압:K60662)

전기용품 안전기준은 협회 (<http://www.ekesa.or.kr>)에서 전기용품안전기준CD-ROM을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